

1. 언어병리학과 박사학위과정 내규

1) 교과목 수강

- 가. 이수교과목 및 보충과목 지도: 입학 후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지도함.
- 나. 종합시험 전까지 통계 및 실험설계에 관한 과목을 9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MANOVA와 Regression 포함).
- 다. 연구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라. 신입생 보충과목
 - ◆ 보충과목 관련
 - ▷ 타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5과목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면제)
 - 언어발달 /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방법
 - 조음장애 진단 및 치료방법
 - 유창성 / 음성 장애 진단 및 치료방법
 - 신경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방법
 -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 ▷ 동일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협의하여 결정

- 마. 선수과목 이수: 해당없음
- 라. 수료판정 시 교과목 이수: 학칙에 준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되(대학원 학칙 제21조),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타과 혹은 타대학 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학위 청구논문 자격시험 응시 자격 기준

- 가. 보충과목 이수
- 나. 2편 이상의 논문(적어도 1편 이상은 제1저자)을 관련 학술지에 게재, Copy본 제출
- 다. 외부 장학재단 (예: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계획서 제출
- 라. 임상실습 감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
 - ◆ 임상자격증소지자: 3학기동안 임상실습감독을 신시한다 (단, 시기 및 환자사례는 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3학기 이후에 실습감독을 하는 경우 외부 감독자에 준하는 감독비용을 제공한다).
 - ◆ 임상자격증 비소지자: 의사소통장애 진단 및 평가 관련 과목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마. 전공 교수의 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조교(TA)
 - 적어도 3회 이상의 수업 참관 및 1회 이상의 강의 실시
- 바. 적어도 한 학기 이상 연구조교(RA):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지도교수의 연구를 도움

※ 위 각 항에 대한 내규시행표(<부록-1, 2>에 제시)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시험 실시 2주일 전까지 학과에 제출.

사. 종합시험

- 시험출제위원: 수강한 과목의 교수
- 시험과목: 3과목 (언어장애, 말장애, 연구방법론)

- 합격기준: 과목 당 70점 이상
- 시험 실시 시기: 매 학기 말 학과에서 공고
- 불합격자: 불합격 과목만 다음 학기에 재시

아. 영어 시험 합격 기준

- TOEFL 531(CBT 210) 이상
- TOEIC 675 이상
- TEPS 569 이상
- IELTS 5.5 이상
-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 프로그램 기준 점수: 70점 또는 70%ile 이상

3) 학위 청구논문

가. 지도교수

-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말까지 해당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성적 제출 일까지 학과에 제출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기 및 절차: 3학기 이후 변경 시, 전-후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서 성적 제출일까지 학과에 제출
- 논문지도교수의 역할: 전반적인 학사 및 논문 관련된 사항들을 시도
- 지도교수 자격 기준: 학칙에 준함.

나. 학위논문

- 논문계획발표: 논문 주제 설정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심사위원이 논문 주제의 학문적 적합성 여부 결정, 발표 시기는 심사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학과에 보고.
- 논문예비발표: 논문계획발표를 통해 구체화된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가 확인하여 예비발표 여부를 결정, 발표 시기는 심사위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예비발표 계획과 결과를 학과에 보고.
-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에 통과하고 학과의 모든 내규를 시행한 자.
- 심사위원 자격: 학칙에 준함.
- 심사위원 위촉 절차: 학과회의에서 결정함.
- 심사위원 구성: 외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의 심사위원단으로 구성.
- 심사 시기 및 횟수: 심사는 학기 중 수시로 학 수 있되, 지도교수의 제청에 의해 심사 위원들이 동의하는 날로 함. 심사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함.

다.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관련 대학원 학칙에 준함 (<부록3> 참조).

라. 기타: 대학원 학칙에 준함.

<부록-1> 박사과정 내규 시행표 작성 안내

	내용	서명
석사 (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학기별 이수과목을 적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관련학술지 게재 논문명	2편 이상 저자, 년도, 논문명, 게재지 제시한 후 Copy본 제출한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통계 및 실험설계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	9학점 이상의 해당 과목명을 적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강의조교(TA)	강의조교 실시한 학기와 과목명을 쓰고 담당교수 확인서명 받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연구조교(RA)	연구조교 실시한 연구명과 연구기간을 쓰고 담당교수 확인서명 받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임상실습감독	임상실습감독 실시한 학기와 실습생 및 사례 수 적고 담당교수 확인서명 받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기타	간접관찰, 기타 특강 관련 내용 적는다.	담당교수 확인서명

본인은 박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위와 같이 내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위 청구논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전공), 학번 ()
이름 (서명)

<부록-2> 박사과정 내규 시행표

	내용	서명
석사과목 이수		
관련학술지 게재 논문명		
통계 및 실험설계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		
강의조교(TA)		
연구조교(RA)		
임상실습감독		
기타		

본인은 박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위와 같이 내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위 청구논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전공), 학번 ()
이름 (서명)

<부록-3> 논문세미나 및 논문지도 학칙

	내용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p>제21조(논문세미나의 수강)</p> <p>① 각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대학원은 논문대체 연구실적을 포함한다)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교과목 추가이수로 대체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8.30., 2019.8.22., 2020.1.21.)</p> <p>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8.30.)</p> <p>③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p> <p>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p> <p>제35조(논문지도교수)</p> <p>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p> <p>② 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9.)</p> <p>제35조의2(공동논문지도교수)</p> <p>각 대학(원)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p> <p>제36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p> <p>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29., 201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개정 2015.12.29.) 2. 정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신설 2015.12.29.)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29.)</p>